

제23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7 월 3 일

여 수 시 장

2024. 7. 3.



여수시 조례 제2109호

붙임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2109호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의 공동전기료를”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의 공동전기료
2.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내 가로등·보안등의 연간 공동전기료. 다만, 가로등·보안등의 전기 전용(專用) 계량기가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연체료는 제외한다.

제5조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업비의 부담)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사업비의 부담)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관리비용의 지원 및 기준) ① (생 략)	제2조(관리비용의 지원 및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여수시장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의 공동전기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년 -----.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의 공동전기료
<신 설>	2.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내 가로등·보안등의 연간 공동전기료. 다만, 가로등·보안등의 전기 전용(専用) 계량기가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연체료는 제외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 (사업비의 부담) ① 해당연도 공동주택 단지별 보조금액은 별표 1의 분담 비율 이내로 하며, 수립된 지원예산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중에서 전용면적이 57㎡이하인 세대가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80이상인 공동주택은 시 분담률을 100분의 95로 할 수 있다.	제5조(사업비의 부담)
제6조(지원결정의 취소) ① (생 략)	제6조(지원결정의 취소) (현행 제1항과 같음)